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620, 1621호
- 다. 제출일자 : 2020. 5. 29.
- 라. 회부일자 : 2020. 6.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9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99.1
2018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98.5
2017	549,326	879,329	878,529	800		800	99.9

-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8억 1,399만원으로 8억 8,60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7,805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78만원, 불납결손액 2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2,466,919	12,430	56,621	7,197			2,535,970	2,114,417		421,553 (16.7%)
2018	2,069,801	5,300					2,075,101	1,898,352	12,430	164,319 (7.9%)
2017	2,784,366	276,217	-	-	-	-	3,060,583	2,779,782	50,696	230,104 (7.5%)

- 예산현액은 25억 3,597만원이며, 이 중 21억 1,44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4억 2,155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 : 품질시험소 건설자재품질시험 건설자재품질시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719만원을 변경되어 노후수배전반 교체공사 사업비로 사용됨.

4) 예비비 지출

-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와 관련하여 예비비 5,662만원을 지출함.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24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은 품질시험소 소관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기관 경영시스템 개정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2,967만원 대비 9.5%임.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억 2,155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율 (%)	비 고
2019	2,535,970	421,552	16%	
2018	2,075,101	164,319	7.9%	
2017	3,060,583	230,104	7.5%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 : 119백만원
 -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119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절감 : 없음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67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9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40백만원
 - 그 밖의 사항들 18백만원
- (품질시험소) 예산절감 : 없음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2억 34.8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57.9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34.2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56백만원
 -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20.5백만원
 - 기본 경비 60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9년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0	99.0
2018년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0	98.5
2017년	549,326	879,329	878,529	800	0	800	99.9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억 1,399만원이었으나 실제 8억 8,60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수납액은 8억 7,80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578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4~15)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8억 8,609만원은 예산현액 8억 1,399만원의 109.0%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12,000	9,708	9,708	△2,292	○공사, 공단 심의 요청 건수 변동
과태료	35,000	20,325	20,325	△14,675	○위반업체 기관통보 건수 감소
지난연도 수입	-	9,860	1,819	9,860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품질시험소					
기타사용료	13,879	3,827	3,827	△10,052	○양재R&D 혁신허브 확장조성 계획에 따른 별관이전으로 점용기관(한마음연맹)퇴거
증지수입	737,904	822,414	822,414	84,510	○품질시험 수수료는 다소 줄었으나, 2019 택시미터 일제 검정에 따른 검정 수수료 대폭 증가
주차요금수입	13,002	3,629	3,629	△9,373	○도로포장센터 이관, 품질시험 민원 건수감소 등 내외부 주차 이용자 감소
위약금	-	636	636	636	○물품 구매 계약관련 지체상금 발생
그외수입	2,209	12,863	12,863	10,654	○예산상 수도미터 검사수수료로 2.2백만원만 책정 하였으나, 우연한 수입(시간선택제 국민연금 환급금 5.4백만원, 도포포장센터 국가R&D 사업 잔액 환입 등) 등 추가 발생
지난연도수입	-	2,836	2,836	2,836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지난년도 과태료(계량기 제조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및 80오4152호 지난년도 공용차량매각대금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며 예산액 1,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971만원(81%)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 ‘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3,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033만원으로 1,46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워 최근 3년간(‘15년~’18년)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추계 하였으나 예측보다 위반 통보건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2]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① '15~'18년도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평균 부과건수 100건 × 250천원 = 25,000천원 ②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최소부과 건수 1건 × 10,000천원 = 10,000천원 ① + ② = 35,000천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표 3] 참조), 과태료 징수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징수결정액의 감소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세수추계를 현실화해야 할 것임.

[표 3]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2019년	35,000	20,325	20,325	-14,675
2018년	34,250	41,112	36,070	6,862
2017년	13,000	82,304	82,304	69,304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986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182만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액 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으나,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정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사용료’는 공유재산임대료로서 예산액 1,38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383만원으로 1,00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¹⁾에 따른 별관 이전계획으로 별관 청사 1층을 사용하던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의 사용 계약이 '19년 6월 7일자로 만료되어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임.

[표 4] 기타사용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p>① 본관 공유재산 사용료(태양열 발전시설) = 641,000 [공시지가(2,755,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2)]×요율(10/1000) =641,200원</p> <p>② 별관 사용료 : 13,238,610원 · 1/4분기 사용료(전년도 4회차 분할납부 예정액) : 3,167,560원 · 2/4 ~ 4/4분기 사용료 【{[건물면적(251.17㎡)×단위면적당평가액('07년감정가의76%⇒159,600원)]+[부지면적(251.17㎡)×공시지가(2,940,070원)×층별요율2/3]×대부요율(25/1000)}】 -익년도 4회차 분할납부 예정 사용료(3,327,440원) = 9,982,350원 · 분기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입 : 88,700원</p> <p>① + ② = 13, 879,000원</p>
--

- '증지수입'은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로 예산액 7억 3,79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8억 2,241만원으로 8천 45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2019 택시미터 일제검정에 따른 정치 및 주행검사 차량 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19,919대→28,537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를 결정함에 따른 것임.

1)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 106호 (2019.04)

- 별관 검사시설 이전 추진경과
 - 2019. 5~10 : 설계용역 완료
 - 2020. 2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서초구청)
 - 2020. 3~ 4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20. 4 : 공사계약 및 착공(건축, 토목, 기계)
 - 2020. 5 : 공사계약 및 착공(전기, 통신)
 - 2021. 1 : 공사준공(예정)

- ‘주차요금수입’은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363만원으로 93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2018년 11월 서울시 조직 개편에 의해 도로포장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생 방문 및 직원 정기권 발행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 ‘위약금’은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63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품질시험소 시험장비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물품 구매 계약 시 납품 기한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점검하는 등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외수입’은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220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나 1,066만원이 증가된 1,286만원이 징수결정되었는데,
 - 이는 시간선택제 국민연금 환급금(540만원)과 도로포장센터 국가 R&D사업 잔액 환입 등 예상치 못한 세입발생에 따라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됨.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83만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79만원), 공용차량 매각금액(200만원), 자동차보험료 해지 환수액(4만원)으로,

- 공용차량 매각금액과 동 차량의 자동차보험 해지 후 돌려받은 해지 환수금은 2018회계연도에 세입조치 하지 않아 미수납되었던 사안으로 담당부서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14~15)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1,197만원) 대비 619만원 감소한 전액 지난연도 수입 578만원으로,
 - 이는 폐업과 부도 등으로 인한 과년도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9건에 대한 체납분으로 38세금징수과와 공동으로 체납정리를 진행중에 있으나 초기 체납은 자칫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754,388	-	-	-	-	-	754,388	567,670	-	186,718 (24.8%)
2018	683,882	5,300	-	-	-	-	689,182	627,388	-	61,794 (8.9%)
2017	902,688	-	-	-	-	-	902,688	769,971	5,300	127,417 (14.1%)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7억 5,439만원으로 이 중 75.2%인 5억 6,767만원을 지출하고 24.8%인 1억 8,672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2)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억 5,439만원 대비 24.8%인 1억 8,67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9%p 증가(8.9%→24.8%)하였음.

[표 5]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43,853	128,098	28.9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8,230	1,751	3.6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310	2,478	16.2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5,000	40,395	42.5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26,400	4,820	18.3
6	기본경비	125,595	9,176	7.3
	합 계	754,388	186,718	24.8

- 먼저,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현액 9,500만원 대비 42%인 4,036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자체도면 작성 시 예산절감, 직원업무 능력향상으로 실효성이 커짐에 따라 발주부서 자체 예산편성(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강동구)이 이루어져 예산 지원사업이 감소(‘18년 24건→’19년 14건)한 것이 주된 원인임.
 - 자체도면 작성으로 금회 총 14건의 사업에 6,110만원을 배정해 5,460만원을 지출하여 3억 8,749만원의 사업시행효과를 얻었는데([표 6] 참조) 동 사업은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상당

히 크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면밀한 수요조사 및 지속적인 사업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불용을 저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6]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의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배정액	집행액	사업시행 효과	해당 사업명
계		61,110	54,604	387,494	
1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16,500	13,728	302,581	동호대교 보수공사의 5건
2	서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14,365	13,613	10,164	서소문고가 보수공사
3	서울시립대학교(시설과)	14,175	14,145	38,405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등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4,048	3,920	6,160	목동운동장내 녹지대 정비공사(2차)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1,210	1,210	추정불가	푸른수목원 참여정원 리모델링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여과과)	1,210	1,210	3,696	노을캠핑장 면정비공사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8,634	5,810	16,016	월드컵 및 산하공원 시설물 재정비공사, 전동셔틀카 탑승장 캐노피 설치공사
8	성동구(공원녹지과)	968	968	10,472	공원내 CCTV개선 사업, 등산로정비사업

- 다음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현액 4억 4,385만원 중 3억 1,575만원을 지출하고 28.9%인 1억 2,81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5건의 설계적격심의 미발생으로 인한 1억 1,940만원과 지출잔액 870만원에 해당함.
- 예산편성 시,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토목) 1~4공구’ 총 5건([표 7] 참고)의 기본설계적격심의가 조사됨에 따라 심의 예산을 편성(1억 2,500만원)하였으나, 발주부서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설계적격심의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 차년도 심의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어려운 측면은 인정되나,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표 7] 2019 예산 불용 관련 기술형 입찰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발주청 (발주기관)	입찰 방법	사업비 (억원)	사업개요	지연사유	추진현황	적격심의 (예정일)	
1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건립사업	강동구 (도기본)	설계시공일 괄입찰	1,57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유찰 (2회)	실시설계 진행중	2020.3.31. 기본설계 적격심의 시행	
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1공구	서울시 (도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2,385	9호선봉은사역~현대 GBC시점부	총사업비 협의 지연 (국토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발주준비 중	2020.10. 적격심의 예정
3		2공구	서울시 (도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2,720	현대GBC시점부~현 대GBC종점부			
4		3공구	서울시 (도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2,556	현대GBC종점부~에 이프릴스킨본사부근			

5	건설공사(토목)	4공구	서울시 (도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2,917	에이프릴스킨본사부 근~휘문고사거리			
---	----------	-----	--------------	--------------	-------	-----------------------	--	--	--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사업은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현액 1,531만원 중 1,283만원을 지출하고 16.2%인 248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당초 건설상 수상인원을 16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상인원이 12명으로 조정되면서 감소된 인원만큼의 상패 및 앨범제작비 등의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된 것임.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행 시 변경설계서가 관련 제법령 및 규정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40만원 중 2,158만원을 지출하고 18.3%인 4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 시스템 성능개선은 1년여 동안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의 오류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 시간 및 비용의 여력 안에서 반영할 수 있는 성능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1,712,531	12,430	56,621	7,197			1,781,582	1,546,747		234,834 (13.1%)
2018	1,385,919			13,200			1,385,919	1,270,964	12,430	102,525 (7.4%)
2017	1,881,678	276,217					2,157,895	2,009,810	45,396	102,688 (6.9%)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예산액 17억 1,25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천 243만원, 예비비 5천 662만원을 합한 17억 8,158만원이고, 예산변경은 건설자재품질시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719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예산대비 지출액은 86.9%인 15억 4,674만원이고 13.1%인 2억 3,483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3)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인 2억 3,483만원으로 전년(7.4%) 대비 증가(5.7%p↑)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불용율을 살펴보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용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8]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세부사업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381,436	57,874	15.2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57,174	34,146	13.3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37,241	55,972	16.6
4	택시미터일제검정	392,729	20,560	5.2
5	기본경비	413,002	60,174	14.6
	합 계	1,781,582	234,835	13.2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143만원 대비 15.2%인 5,78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출잔액 중 공공운영비가 2,509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2,700만원 중 150만원만 지출된데 따른 것임.

[표 9] 건설자재품질시험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예산집행	집행잔액	불용율(%)
계	381,436	323,562	57,874	15.2
사무관리비	129,670	122,641	7,029	5.4
공공운영비	38,400	13,314	25,086	6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7,943	58	0.7
특정업무경비	31,656	25,083	6,573	20.8
시험연구비	84,410	68,113	16,297	19.3
시설비	7,197	6,094	1,103	15.3
자산및물품취득비	82,103	80,375	1,728	2.1

-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택시미터 주행검사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수리물품구매 및 수도미터검정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양재 R&D 혁신허브 확장조성 계획에 따른 별관이전으로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16대→4대), 수도계량기 검사시설(6대→5대)이 축소이전하면서 유지보수의 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거나,
- 2019년 2월부터 택시미터 일제검정이 실시되면서 이에 필요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물품구매를 ‘택시미터 일제검정실시’ 사업 예산으로 총당해서 지출한 것으로,
- 이는 두 개의 사업에 같은 목적의 예산을 중복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현액 2억 5,717만원 대비 13.3%인 3,41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에 해당하는데 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장비구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는 청사(본관, 별관) 청결과 방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상적 경비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724만원 중 2억 8,127만원을 지출하고 16.6%인 5,597만원이 불용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 5,239만원과 지출잔액 358만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1,300만원 대비 14.6%인 6,01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회 불용의 주된 사유는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연구센터 업무가 2018.11.1.자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로 이관됨에 기인한 것임.
 - 업무 이관에 있어 양 부서 간 충분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잔류인원 산정을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 향후 부서 간 업무 이관 시 차년도의 합리적인 예산계획 수립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기 이전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의 변경

- 품질시험소의 금회 예산변경 사용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1건으로, 청사 전기안전 제고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책정되어 있는 구내 노후 수배전반 교체 비용 중 719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구내 노후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에 사

용한 것인데,

-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사항과 회계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10] 예산변경 사용 내역

(단위: 만원)

예산과목				예산 편성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일반회계)	건설자재 품질시험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34,647	-	719	33,928
			시설비 (401-01)	29,682	719	-	30,401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1건에 5,662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표 11]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만원)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5,662	2018-10-26	품질시험소 주행검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인건비 지급

- 그 사유는 품질시험소 주행검사 기간이 계획과 달리 4주에서 6주로 연장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 당초 택시미터 주행검사를 품질시험소와 한시검정기관에서 4주간 실시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한시검정기관에서 낮은 검사수수료 문제 등으로 주행검사를 회피하면서 품질시험소 주행검사대수 증가로 검사기간이 6주로 연장됨에 따른 것임 ([표 12] 참조).

[표 12] 택시미터 일체검정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주행검사 대수	품질시험소	19,919	28,537
	교통안전공단	14,960	9,144
	지정정비공장	36,960	31,183
주행검사 기간		4주	6주

- 낮은 검사 수수료 문제에 있어 검정수수료 관련규정이 개정²⁾됨에 따라 서울시는 검정수수료 산정용역³⁾을 추진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후 이처럼 타 공공기관이나

2)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관련 규정 현황

관 련 규 정		'95~현재	개 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19.12.9. 개정)	[별지 제59호]	3,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20.2.21. 개정)	[별지 제 6호]	정치검정 1,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별지 제 7호]	주행검정 2,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3)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산정용역 추진 ('20.3.10.~5.18.)

- 산정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③항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9호(2007. 8. 13.)
- 산정방법 : 차종별 검정거리·소요 시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산정

○ 산정결과: 택시미터 검정수수료(안)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1대	600원
※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민간기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다음연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